

Trust &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ISO 26000(사회적책임 국제표준), OECD 뇌물 방지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윤리기준 및 적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1일 시행)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년 9월 28일 시행)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 부패,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등 윤리경영에 대한 관리 범위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윤리기준에 대한 실천력 강화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준법 윤리경영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윤리적 기업을 목표로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강화된 법적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 실천프로그램과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격한 윤리기준과 원칙의 실천

신한금융그룹은 윤리경영 이념을 기업문화로 내재화하고,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실천서약'을 실시하는 한편,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윤리준법 사이버 교육과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윤리준법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매월 둘째 주를 '준법감시교육주간(ABC주간)'으로 지정하고 금융법규, 자금세탁방지, 윤리준법 우수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ompliance Letter를 배포하여 각 부서 준법감시책임자를 통해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도 필요한 바, 그룹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룹 윤리강령 사례 팝업 동영상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일본, 베트남 등 모든 해외 현지법인 및 영업점에 배포하고, 현지 채용 직원들에 대한 윤리준법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한카드는 각 부서 준법감시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신입 및 경력 직원의 법규준수 강화교육, 신용카드 모집질서 정상화를 위한 정도영업 문화 전파 교육, 불완전판매 감축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영업점 현장 점검 시 금융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 주요 준법감시업무, 사고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거래내역과 불공정 거래내역, 재산상 이익수수 등을 점검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신한금융그룹은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이 총괄하고 있으며, 각 그룹사별로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룹 준법감시인은 각 그룹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준법감시보고서, 내부거래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으며, 그룹사에 대한 테마점검, 내부통제 이행실태 현장 점검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각 그룹사는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및 준법감시업무규정에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내부자 신고제도, 명령휴가제도, 고위험 사무직 직무분리 제도, 신상품 개발 및 판매 프로세스 구축, 영업점 자체점검 제도 등)을 반영함으로써 강화된 금융감독법규에 신속히 대응하고, 그룹의 내부통제 체제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사이버 교육 및 외부 전문가 특강, 그룹사 방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회사 규정에 반영하고 임직원 전용 청탁금지법 어플(내 손안의 청탁금지법)을 개발·배포하는 등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금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부자 신고제도

세계적 기업이었던 엔론과 월드컴의 파산 원인은 분식회계 등 비윤리적 경영과 더불어 직원이 제기한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소홀히 관리한 데 있습니다. 조직 내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내부자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 내부통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내부자 신고제도인 '신한지킴이'의 2016년 제보건수는 제도 홍보 활동 강화 및 신고 채널 다양화로 2015년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위법행위 의심, 협력사 민원, 부당한 업무지시 등 다양하며,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내부자 신고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카드사는 내부 고발제도를 매분기 직원들에게 공지하며, 인트라넷 배너를 통해 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 기능 등을 통해 제보자의 신분, 제보내용 등을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인트라넷, 직접 방문, 유선, E-mail 등을 통해 상근감사위원에게 직접 고발하는 내부 고발 제도 운영과 함께 분기별 전 직원 대상 신고제도 공지와 인트라넷 배너를 통해 임직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 역시 회사 홈페이지 내 신문고 운영으로 사용대상 범위를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등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신고제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2012년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효율적 평가와 관리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위험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을 발표하여 금융기관이 제도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신한은행은 은행 내 발생 가능한 자금세탁 위험요인의 사전적 식별 및 평가, 개선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 2016년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자금세탁 위험의 식별 및 분석을 위해 본부부서와 영업점을 구분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본부 부서 중 위험 발생 연관도가 높은 부서를 선정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업무 프로세스 분석, 자금세탁 위험 요인 추출 및 위험 크기 등을 측정하였으며, 영업점 대상으로 영업환경, 고객특성, 고객유형 등을 분석하여 자금세탁 위험 발생요인의 계량화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및 업무환경, 업무절차, 직원,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사적 위험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교육 강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해 2015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용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사별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 계약 및 매매명세신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목적 - 미공개 정보 취득 가능성 높은 부서 재분류 및 확대 점검(연 12회) • Compliance Letter를 통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관련 설명회' 참여 •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책자 임직원 배포 • 본부·그룹·지역별 준법감시담당자 교육(연 10회) • 영업점 현장조사 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선언 • 전 임직원 대상 자체 교육 실시 • 시장질서 교란행위 내용 회사 내규 반영 • 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 실시 •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제도의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 직원 및 직계가족